

#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2011.12.29

## 제5장 제1절 경조금 지급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25조(지급기준) ① &lt;생략&gt;&lt;생략&gt;            ② <u>본인</u> 사망은 주식회사케이티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재해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이외의 사망을 말한다.            ③ &lt;생략&gt;&lt;생략&gt;</p>	<p>제25조(지급기준) ① &lt;좌동&gt;            ② <u>본인 및 배우자</u> 사망은 주식회사케이티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재해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이외의 사망을 말한다.            ③ &lt;좌동&gt;</p>	<p>배우자의 일반사망 (단체보험 → 경조금)</p>

## 제5장 제6절 의료비 지급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74조(의료비) <u>사원 및 그 가족의 가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</u></p>	<p>제74조(의료비) &lt;삭제&gt;</p>	<p>예산 전환 (실손보험)</p>
<p>제75조(지급대상) <u>의료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(청원경찰 포함) 및 사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(만20세 이하)로 한다.</u></p>	<p>제75조(지급대상) &lt;삭제&gt;</p>	<p>"</p>
<p>제76조(지급범위) ① <u>의료비 지급은 병.의원,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비중 사원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본인부담액을 지급한다.</u>                  ② <u>지급대상자 전체(동 세칙 제75조의 지급대상자 범위 내)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액이 발생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하여 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MRI, CT 본인부담액의 30%를 지급한다. 단,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된 진료기간이 월을 달리하여 연속된 경우 해당 진료비를 진료 종료월에 포함하여 지급 한다(2009.7.15 개정)</u>                  ③ <u>지급제외 : 사원 본인 의료비중 입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제외(이 경우 직장단체보험을 통한 입원의료비 청구. 2010.11.09 개정)</u></p>	<p>제76조(지급범위) &lt;삭제&gt;</p>	<p>"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77조(지급금액) ① <u>요양기간이 속하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1,000만원(가족포함) 까지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의료비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하며 지급액 결정시 1,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.</u></p>	제77조(지급금액) <삭제>	"
<p>제78조(지급절차) ① <u>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/전산출력 서식)</u></p> <p>2. <u>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</u>  - <u>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함</u></p> <p>3. <u>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확인서(2010.11.9 개정)</u></p> <p>② <u>지급신청서 제출기한은 요양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(2010.11.09 개정)</u></p> <p>③ <u>의료비는 매 주단위로 지급하며,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지원한다.</u></p> <p>④ <u>의료비 지급기관에서는 확인 절차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제78조(지급절차) <삭제>	"
<p>제79조(지급제한) ① <u>타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지원을 제한한다</u></p> <p>② <u>삭제(2009.5.29)</u></p>	제79조(지급제한) <삭제>	"

## 제5장 제7절 교육보조비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82조(지급기준) ① <u>교육보조비는 대상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, 매월 말일(휴무일인 경우 전일)에 대상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지급년도의 산정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82조(지급기준) ① <u>교육보조비는 대상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, 대상자녀 1인당 연120만원씩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은 금액은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되,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 지급한다.</u></p>	<p>선택적 복지 적용</p>
<p>제83조(지급신청) 교육보조비 지원대상 사원은 기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인사(e-HR)시스템을 통하여 신청(연 1회) 하여야 한다.(2010.11.9 개정)</p>	<p>제82조(지급기준) &lt;삭제&gt;</p>	<p>“</p>

## 제5장 제8절 선택적복지제도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84조(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) 사원은 개인별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</p>	<p>제84조(선택적복지제도) ① 사원은 개인별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5절 및 제7절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적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한다.</p> <p>③ 선택적복지제도의 구성항목은 공통, 필수, 추가항목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선택적복지제도의 구성항목별 선택적 복지포인트(이하 '복지포인트'라 한다)는 공통항목은 60만 포인트를 부여하고, 추가항목중 교육비는 제5절 및 제7절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부여한다.</p> <p>⑤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사원에게는 추가항목중 인재육성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.</p> <p>⑥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통해 부여하되, 대학장학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 복지포인트 1포인트는 통화기준으로 환산시 1원으로 한다.</p>	<p>선택적복지 확대</p>

<p>제85조(운영원칙) ① 기금은 사원에게 사용금액을 개인 별 복지카드에 부여한다.</p> <p>② 복지항목은 기념품비(회사창립기념품, 노조창립기념품, 생일기념품, 근로자의 날 기념품 등), 문화·체육·레저활동비 등으로 한다.</p> <p>③ 기타 세부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85조(복지포인트 관리) ① 복지포인트의 사용 유효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. 다만, 퇴직시에는 퇴직일의 익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복지포인트는 해당 항목의 부여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	<p>“</p>
--	--	----------

## 부칙

현 행	개 정	비 고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2011.12.29.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.1.1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(주)케이티프리텔에서 전환임용된 직원에게 적용되던 (주)케이티프리텔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은 폐지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(주)케이티프리텔에서 전환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유/초/중 자녀교육비 지원, 대학자녀학자금 및 본인학자금 지원수준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.</p> <p>③ 2011년 중 발생한 의료비는 2012.6.30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.</p>	

## 별표

현 행		개 정	비 고												
(별표1) 복지기금 지급기준		(별표1) 복지기금 지급기준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 및 대상</th> <th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립</td> <td>배우자 (단위보위 비적용사)</td> <td>■ 2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 및 대상		지급액	시립	배우자 (단위보위 비적용사)	■ 200만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 및 대상</th> <th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립</td> <td>배우자 (단위보위 비적용사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선정시립 100만원</li> <li>■ 조식 200만원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 및 대상		지급액	시립	배우자 (단위보위 비적용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선정시립 100만원</li> <li>■ 조식 200만원</li> </ul>	
구분 및 대상		지급액													
시립	배우자 (단위보위 비적용사)	■ 200만원													
구분 및 대상		지급액													
시립	배우자 (단위보위 비적용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선정시립 100만원</li> <li>■ 조식 200만원</li> </ul>													